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세요!!

원산지표시 해당 품목



※ 영업점 형태와 상관없이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가공품) 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원산지표시 의무

농산물 (8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수산물 (12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가공품과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포함

원산지의 표시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본] 사용 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취식 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 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 단, 메뉴판이나 게시판 작성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표시 별도 가능

글자 크기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표시 위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동일품목의 혼합표시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표시판 제목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표시판 크기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 **(A3 사이즈)**

글자 크기

60포인트 이상(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

부착 위치

[기본]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모든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 부착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 농식품 부정유통신고 **1588-8112**